2023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재입학 허가 계획

'22. 11. 24.(목) / 교육대학원

❑ 관련 규정

「학칙」 제49조(재입학)

①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「학칙」 제80조(재입학·전과·편입학자의 학점)

①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고려하여 학점을 재사정하고 나머지과정을 이수하게 한다.

「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」 제5조(재입학)

①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 전 **전공주임의 추천**을 받아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②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남는 정원의 범위에서 **한 차례만 허가**할 수 있으며, 재입학자가 **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** 있다.

❑ 재입학 요건

- 교육대학원 재학 중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동일 전공에 재입학 신청 가능
- 원서접수 전 해당 전공주임과 면접을 한 후 적격자로 추천을 받아야 함

❑ 재입학 절차 및 일정

- **(학생)** 해당 전공주임과의 면접 이후 재입학 적격자로 추천(원서, 사유서 참조) 받은 후 전공사무실로 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
- **(전공)** 재입학 원서 및 구비 서류를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공문 제출(원본 포함)
- **원서 접수기간 : '22. 12. 21.(수) ~ 12. 30.(금)**
- 재입학 허가 결정 및 통보 : '23. 1월 말(예정) 홈페이지 공고

❑ 제출서류

- [서식1] 재입학 원서 1부.
- [서식2] 재입학 사유서 1부.
- [서식3] 서약서 1부.
- [서식4, 5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.
- 성적증명서 1부.